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수신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조속한 신청 당부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18.1.1.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일자리안정자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주고용센터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과 접수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신 경우 팩스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신속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청주고용센터 전화 043-230-6714~6, 6793, 팩스 0505-130-2068

붙임 : 1.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청주고용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 참조). 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장



주무관	김연아	팀장	장미영	소장	전결 2018. 2. 13. 김선재
협조자					
시행	청주고용센터-3073	(2018. 2. 13.)	접수		
우	2857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사창동 171-5 청주고용센터)	/ http://www.moel.go.kr/cheongju		
전화번호	043-230-6715	팩스번호	0505-130-2068	/ ty0701@korea.kr	/ 비공개(6)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 '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가능)
-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을 하지 않은 사업주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매출액 30%이상 감소 등)임을 소명한 경우 계속 지원 가능

□ 지원제외 기업

-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②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 지원요건이 되는 근로자

-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
- * 보수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금액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월 20만원 이하 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총 급여
- * 특수관계인(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후 신청가능
-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자도 지원(합법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이상 유지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팩스
- * 야간·주말 접수창구 운영: 매일 19:00까지, 주말(토·일) 09:00~18:00(임금대장 지참)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고용보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신청 서식 및 제출서류

- (고용보험 적용대상)
 - (고용보험 기 가입사업장·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상 서식)
 - ('18년 신규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 * 위 신고서에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세부내역, 임금지급 내역 확인가능 서류 등 함께 제출
- (고용보험 적용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 위 신고서에 업종확인 가능 서류(사업장), 근로관계 확인 가능서류(근로자), 임금 지급내역 확인 가능 서류 등 함께 제출
- (두루누리 지원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지급희망서’ 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 두루누리 사업장은 지원금 신청일 전월분부터 지급(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 * 월중 입·퇴사·휴직자: 근무일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 신청일 현재 사업이 정상운영 중이며,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방식) 연 1회 신청 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매월 자동 지급
 - 지원 대상인원 및 보수 변동 시 변경신청 필요
 -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방식 선택가능(계좌로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택일)
 - 예산 소진시까지지만 지원(대상 사업장은 조속히 신청 필요)

부정수급 시 조치 등

- 거짓 신고 등 부정수급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 조치)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청주시사 (043) 229-5082~9, 229-5091~7
	☎ 청 주 고 용 센 터 (043) 230-6714~6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고용센터 콜센터 1350